

목 차

정 관	1
-----------	---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상호)

이 회사는 두산밥캣 주식회사라 한다. 영문으로는 Doosan Bobcat Inc.라 표기한다. <2015. 11. 20 일부개정>

제2조(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타회사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 내용의 지배·경영 지도 및 육성, 자문
2. 제1호의 회사에 대한 공통서비스의 제공
3. 브랜드,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관리 및 라이센스업
4.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일체의 사업
5. 기타 위 각호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 또는 유익한 사업의 영위 및 투자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 등의 설치)

-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고방법)

이 회사의 공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doosanbobcat.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한국경제신문에 게재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제 2 장 주 식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주로 한다.

제6조(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500원으로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제7조(주식의 종류)

- ①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종류는 기명식 보통주식과 기명식 종류주식으로 한다.
- ② 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의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전환주식, 상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2015. 3. 31 일부개정>

제8조(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

-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015. 3. 31 일부개정>
- ②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 1% 이상으로 우선 배당률을 정한다. <2015. 3. 31 일부개정>
- ③ 보통주식의 배당률이 이익배당 우선주식의 배당률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15. 3. 31 일부개정>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15. 3. 31 일부개정>

⑤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어느 영업년도에 있어서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누적적 또는 비누적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2015. 3. 31 일부개정>

제8조의2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2015. 3. 31 신설>

①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이하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는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발행가액에 연 [30%] 이내의 가산금액을 더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우선하여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의 범위를 정한다.

③ 보통주식에 대하여 분배되는 주당 잔여재산의 금액이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하여 분배되는 주당 잔여재산의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참가적 또는 비참가적인 것으로 할 수 있다.

④ 이 회사가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 잔여재산분배 우선주식에 대한 신주의 배정은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 또는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으며,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한다. 단, 상환주식에 대하여는 유상증자 또는 무상증자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의3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2015. 3. 31 신설>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관련 법령상 허용되는 한도까지 의결권이 배제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이익배당 우선주식을 전항의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동 이익배당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는 것으로 한다.

제9조(전환주식)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 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 또는 회사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주식(이하 “전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015. 3. 31 일부개정>

②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식의 발행가액은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한다.

③ 전환조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와 내용은 주식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전환주식의 주주 또는 회사가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발행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되어, 이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 3. 31 일부개정>

제10조(상환주식)

- ① 이 회사는 종류주식의 발행 시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그 주식을 주주의 상환청구 또는 회사의 선택에 따라 회사의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상환주식(이하 “상환주식”)으로 정할 수 있다. <2015. 3. 31 일부개정>
- ② 상환주식의 상환가액은 발행가액 및 이에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있는 경우)으로 하며, 가산금액은 배당률, 이자율, 시장상황, 기타 상환주식의 발행에 관련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발행 시에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 할 수 있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 시 이사회에서 상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 조정사유, 조정의 기준일 및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 ③ 상환주식의 상환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④ 상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으로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할 수 있다. 단, 분할상환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 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다.
- ⑤ 이 회사는 상환주식을 상환하고자 할 때는 상환할 뜻과 상환대상주식,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게는 따로 통지를 하며 위 기간이 만료된 때에 강제 상환한다.
- ⑥ 주주에게 상환청구권이 부여된 경우 주주는 자신의 선택으로써 상환주식 전부를 일시에 또는 분할하여 상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주주는 상환할 뜻 및 상환대상주식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회사는 상환청구 당시의 배당가능이익으로 상환대상주식 전부를 일시에 상환하기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분할상환할 수 있고, 그 경우에는 회사가 추첨 또는 안분비례의 방법에 의하여 상환할 주식을 정할 수 있으며 안분비례 시 발생하는 단주는 이를 상환하지 아니 한다.
- ⑦ 전환주식을 회사의 선택에 의하여 상환할 수 있는 상환주식으로 발행한 경우 주주의 전환권 행사와 회사의 선택에 의한 상환 간에 상호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11조(주권의 종류) 이 회사는 주권 및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및 신주인수권증서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 3. 27 일부개정>

제12조(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를 배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2016. 6. 13 일부개정>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2016.6.13 신설>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4. 상법 제 340 조의 2 및 제 542 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16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6. 긴급한 자금조달, 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기타 회사의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일부개정>

③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3조(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이사, 감사, 피용자를 의미하며, 상법 제 542 조의 3 제1항에서 규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 감사, 피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는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상법 제 542 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한도까지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2016. 6. 13 일부개정>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일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이 회사의 경영, 해외영업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임직원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1. 최대주주(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상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2. 주요주주(상법 제 542 조의 8 제2항 제6호의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수관계인. 다만, 당해 법인의 임원(상법 제 542 조의 3 제1항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을 포함)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 <2016. 6. 13 일부개정>

4.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이사.

<2016. 6. 13 일부개정>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2016. 6. 13 조항변경>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6. 6. 13 조항변경>

1.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2.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이를 부여하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10년 내에서 부여시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는 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다. 단, 관계법규에 따라 최초 행사가능 시기는 변경될 수 있다. <2016. 6. 13 조항변경>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 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정년을 제외한다)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2016. 6. 13 조항변경>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6. 6. 13 조항변경>

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2016. 6. 13 조항변경>

1. 당해 임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및 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4조의2(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2016. 6. 13 신설>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2016. 6. 13 신설>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전자등록, 주주명부의 관리,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2016. 6. 13 신설, 2019. 3. 27 일부개정>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016. 6. 13 신설>

제14조의3 (주주 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 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 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 등을 제14조의2에서 정한 명의개서대리인에 신고하여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② 전항에 게기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는 대한민국 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③<2019. 3. 27 삭제>

제15조(주주명부의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②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경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 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채

제16조(사채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유헌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6. 6. 13 일부개정>
1. 전환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3.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 ②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2015. 3. 31 일부개정>
- ③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 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5. 3. 31 일부개정>
- ④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유헌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016. 6. 13 일부개정>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2.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 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3.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기술도입, 기타 경영상 필요로 인해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및 기타 투자자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16 규정에 의하여 해외에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016. 6. 13 신설>
- ②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 ③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보통주식 또는 이 정관에서 정한 종류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사채발행 시 이사회가 정한다. <2015. 3. 31 일부개정>
- ④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발행일 후 1월이 경과하는 날로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다만, 위 기간 내에서 관계법령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그 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 ⑤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2015. 3. 31 일부개정>

제18조의2(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의2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2016. 6. 13 신설, 2019. 3. 27 일부개정>

제18조의3(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의 전자등록) 이 회사는 사채권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사채 및 신주인수권증권에 표시되어야 할 권리를 전자등록한다. <2019. 3. 27 신설>

제 4 장 주주총회

제19조(소집시기)

-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사업년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20조(소집권자)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소집한다.

제21조(소집통지 및 공고)

-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 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서면에 의한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2016. 6. 13 신설>

제22조(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3조(의장)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로 한다.

제24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 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6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7조(의결권의 불통일 행사)

-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 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의결권의 대리 행사)

-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시 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제30조(서면투표제)

- ①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② 이 회사는 총회의 소집통지서에 제1항에 따른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필요한 서면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제2항의 서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회일의 전일까지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제 5 장 이사 ·이사회

제32조(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법령이 정하는 최저인원수 이상의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제33조(이사의 선임)

-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이사의 임기)

-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해당 이사를 선임 하는 주주총회에서는 본문의 임기 범위 내에서 그 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② 이사의 임기가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전에 만료될 경우에는 그 총회의 종결 시까지 그 임기를 연장한다.

제35조(이사의 보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선임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32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6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① 이사회는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 ② 이사회는 그 필요에 따라 이사인 또는 이사 아닌 회장, 부회장, 사장을 선임하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임원의 선임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7조(이사의 직무)

- ① 대표이사는 회사를 각각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38조(이사의 보고의무)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2016. 6. 13 일부 개정>

제39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 회사 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한다.
- ② 이사회는 분기 1회 이상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③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직전일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0조(이사회의 결의방법)

-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기타 관련 법령에서 이와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 ② 이사회의 의장은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 ③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41조(이사회의 의사록)

-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사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2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급여, 상여, 퇴직금 등)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하고 이사회는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제43조(위원회)

- ①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내부거래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위원회
-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9조(제2항은 제외), 제40조,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 제40조 제1항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결의요건을 가중하여 정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제 6 장 감사위원회

제44조(감사위원회의 구성)

-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두며,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 ②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542조의 11 제3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2016. 6. 13 신설>
- ③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2016. 6. 13 신설>
- ④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조 <2016. 6. 13 삭제>

제46조 <2016. 6. 13 삭제>

제47조(감사위원회의 직무 등)

-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2016. 6. 13 일부개정>
-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자체 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2016. 6. 13 신설>
- ④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외부감사인을 선정한다. <2016. 6. 13 신설, 2019. 3. 27 일부개정>
-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2016. 6. 13 신설>

제48조(감사록)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제49조 <2016. 6. 13 삭제>

제 7 장 계 산

제50조(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1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 전에 다음 서류(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할 경우 이를 포함한다)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 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 및 그 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간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 ③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를 영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와 함께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 전부터 본사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 간 비치하여야 한다.
- ④ 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가 선정한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에게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2019. 3. 27 일부개정>

제53조(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처분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54조(이익배당)

-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 ②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이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 또는 같은 종류의 주식(제9조의 전환주식, 제10조의 상환주식을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배당은 매 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 55조(분기배당)

- ① 회사는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현재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2016. 6. 13 일부개정>
- ② 제1항의 이사회 결의는 제1항의 말일부터 4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2016. 6. 13 일부개정>
- ③ 분기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2016. 6. 13 일부개정>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2016. 6. 13 일부개정>
 5. 분기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당해사업연도 중에 분기배당이 있었던 경우 그 금액의 합계액 <2016. 6. 13 일부개정>
- ④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각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금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

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2016. 6. 13 일부개정>

제56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0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정관은 2015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0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제2항, 제44조 제2항 및 제55조 중 개정된 부분은 이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5. (시행일) 이 정관은 2019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8조의3 및 제18조의2 개정내용은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되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